

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견 심사보고서

2005. 9. 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8. 2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. 8. 24.
- 다. 상정일자 : 제11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(2005. 9. 7)
상정, 심사, 원안채택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도식 도시관리과장)

가. 제안사유

-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5-264(2005.6.17)호로 열람·공고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안)과 관련하여 재건축에 의한 주거지역 전환등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 마포지구재정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창전로 변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일반미관지구로 결정 입안 함.

나. 현황 및 검토사항

- 위 치 : 신수동67-1 ~ 구수동 101-46 간
- 규 모 : 연장 1,450m, 폭원 양측12m
- 검토사항 :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해제 예정인 창전로 변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일반 미관지구로 결정.

다. 추진경위

- 2005.07.21 :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입안
- 2005.07.21 : 마포구 도시관리계획(안) 열람공고
(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05-310호)
 - 게재신문 : 세계일보, 한겨레신문(2005.07.25일자)
 - 열람기간 : 2005.07.25 ~ 2005.08.08
- 도시관리계획(안)열람공고 접수의견 : 없음

라.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 조서

구분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 고
신설	창전로	일반 미관 지구	신수동67-1 ~ 구수동101-46간	34,800	1,450	양측 12		서울시마포구공고제2005-264호(2005.6.17) 마포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해제예정구간에 신설 결정

마. 환경성 검토결과 : 특이사항 없음.

바. 자원조달 방안

-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에 따른 예산소요는 없음.

사. 검토의견

-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 된 창전로변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관리를 위해 일반미관 지구로 결정 입안함이 타당함.

3.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2005-8-4 법률제7678호) 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(일반 미관지구)결정(안)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본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일반 미관지구) 결정조서를 보면 마포구 신수동 67-1~구수동 101-46간 , 연장 1,450m, 폭원 양측 12m에 대하여 일반미관지구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마포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개별사업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이 다수 입지한 창전로 일대는 구역지정·관리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토록 변경됨에 따라 일관성있는 도시미관관리를 위하여 일반 미관지구로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이종일 위원) : 창전동과 같이 난개발이라는 느낌이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뉴타운 계획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
- 답변요지(박도식 도시관리과장) : 예, 알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채택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

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5. 08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마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

2. 제안사유

-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 제2005-264(2005.6.17)호로 열람·공고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안)과 관련하여 재건축에 의한 주거지역 전환등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 마포지구재정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창전로 변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일반미관지구로 결정 입안 함.

3. 현황 및 검토사항

- 위치 : 신수동67-1 ~ 구수동 101-46 간
- 규모 : 연장 1,450m, 폭원 양측12m
- 검토사항 :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 예정인 창전로 변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일반미관지구로 결정.

4. 추진경위

- 2005.07.21 :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입안
- 2005.07.21 : 마포구 도시관리계획(안) 열람공고
(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05-310호)
 - 게재신문 : 세계일보, 한겨레신문(2005.07.25일자)
 - 열람기간 : 2005.07.25 ~ 2005.08.08
- 도시관리계획(안)열람·공고 접수의견 : 없음

5.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 조서

구분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 고
신설	창전로	일반 미관지구	신수동67-1 ~ 구수동101-46간	34,800	1,450	양측 12		서울시마포구공고제 2005-264호(2005.6.17) 마포지구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 해제예정 구간에 신설 결정

6. 환경성 검토결과

- 특이사항 없음.

7. 자원조달 방안

-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결정에 따른 예산소요는 없음.

8. 검토 의견

-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 된 창전로 변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관리를 위해 일반미관지구로 결정 입안함이 타당함.

따로붙임 : 도시계획현황 도면(1/5000) 1부.

도시관리계획(일반미관지구) 결정(안)

S=1/5,000



※ 도시관리계획(일반미관지구) 결정 조서

구분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비 고
신설	광견로	일반 미관지구	신수동 67-1 ~ 구수동 101-46간	34,800	1,450	양측 12	

범 례	
신 설	———